

2026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 [요약]

[감사관 청렴기획담당]

□ 추진 목표 및 방향

목표	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기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방향	처리 신뢰 회복 중심의 처리체계 강화
	제도 기준·절차 정비로 제도 운영의 객관성·일관성 강화
	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 확산

전략	1 처리체계 강화	추진 과제	[신고] ① 체계적·전문적 상담·조정 [조사] ②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[처분] ③ 엄정한 처분 [회복] ④ 피해자 회복 지원 [관리] ⑤ 피해 재발 방지
	2 제도 개선		[진단] ① 촘촘한 원인 진단 [제도] ② 제도 정비
	3 교육 및 인식 개선		[예방] ① 예방교육 의무 실시 [인식] ② 권위주의 인식 개선

□ 주요 변경사항

구분	2025	2026
갑질 판단 절차 강화	갑질판단협의체 구성·운영 자율 필요 시 조사 결과에 대해 갑질판단 협의체 자문 사업부서 조사·판단	갑질판단협의체 구성·운영 (외부위원 1/3 이상 포함) 조사 결과에 대해 갑질판단협의체의 자문 확대·강화 사업부서 조사 → 감사부서 2차 검토·판단
현장 중심 실태조사	(본청) 행정기관 및 학교 대상 실태조사	- (본청) 행정기관(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) 대상 실태조사 - (지원청) 관내 학교 대상 실태조사
갑질지수 (갑질온도계) 연계 사전 예방관리 강화	- 갑질지수 1회 측정 - 갑질온도계 구현 및 공유 - 취약 기관 컨설팅	- 갑질지수 2회 측정(4월, 7월) - 갑질온도계 구현 및 공유 - 취약 기관 자체 개선계획 + 컨설팅 - 개선 미흡 기관 개선권고 조치
재조사	재조사 절차 부재	새로운 증거·사실, 누락, 위·변조 발견 시 재조사 가능
허위신고 통제	허위신고자에 대한 조치절차 부재	허위신고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
기관 컨설팅 강화	반복, 다수인 신고기관 컨설팅 권장	3회 이상 신고 발생 시 기관 컨설팅 실시
조정결과 이행확보	조정(합의) 시 합의사항 이행 근거 부족	조정(합의) 시 조정합의서 작성으로 합의사항 이행 담보 강화

□ 주요 추진내용

추진전략	추진과제	추진사업
① 처리체계 강화	① 체계적·전문적 상담·조정	· 사전상담제 운영 - 신고 전 갑질 상담 및 신고 전 조사 전 사전상담 · 조정절차 강화 [신규] [강화] - 갈등조정전문가의 조정절차 실시 - 조정(합의) 시 <u>조정합의서 작성</u>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 강화
	②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	· 신속·공정한 조사 - 즉시 조사 착수(접수 후 5일 이내) 및 조사기간 30일 준수 - 기피·회피 시 조사자 배제, 조사기간 중 분리조치 · 판단 절차 강화 [신규] [강화] - <u>갑질판단협의체 구성·운영</u> - <u>감사부서 2차 검토·판단 실시</u> · 재조사(조례 제10조) [신규] - <u>새로운 증거·사실, 누락, 위·변조 발견 시 재조사 가능</u>
	③ 엄정한 처분	· 처분 등 엄정 조치 [강화] - 인정 시 최소 경고, 반복·<u>2차 가해 시 징계 등 조치</u> - 모든 처분 사안 감사처분심의 · 허위신고 방지(조례 제14조) [신규] - <u>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</u> 등 조치
	④ 피해자 회복 지원	· 심리·법률상담 지원 -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· 기관 회복 지원 [강화] - 신고 발생기관 컨설팅 지원 - <u>동일 기관 3회 이상 신고 발생 시 기관 컨설팅 실시</u>
	⑤ 피해 재발 방지	· 사후 관리 모니터링 - 2차 피해 방지 모니터링 실시
	⑥ 피해 재발 방지	
② 제도 개선	① 충충한 원인 진단	· 현장 주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[강화] - (본청) 행정기관(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) 대상 실태조사 - (<u>교육지원청</u>) 관내 <u>학교 대상 실태조사</u>
	② 제도 정비	·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지침 개정 [신규] - <u>지침 개정</u>으로 사안 처리 절차 표준화 및 객관성 확보
③ 교육 및 인식 개선	① 예방교육 의무 실시	·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실시 - 전 기관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의무 실시
	② 권위주의 인식 개선	· 갑질지수(온도계) 확대(조례 제13조 및 제15조) [강화] - <u>갑질지수(온도계) 연 2회 측정(4월, 7월)</u> - <u>갑질지수 기반 취약 기관 집중 개선</u>

[참고]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도

